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설정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제정 2003년 10월 20일	개정 2020년 05월 18일
개정 2005년 07월 04일	개정 2020년 06월 10일
개정 2006년 11월 01일	개정 2020년 07월 29일
개정 2008년 06월 19일	개정 2020년 08월 14일
개정 2009년 02월 14일	개정 2020년 12월 21일
개정 2012년 11월 01일	개정 2021년 02월 01일
개정 2015년 09월 01일	개정 2021년 02월 16일
개정 2016년 05월 18일	개정 2021년 03월 24일
개정 2017년 01월 02일	개정 2021년 04월 19일
개정 2017년 02월 14일	개정 2021년 05월 10일
개정 2017년 02월 27일	개정 2021년 05월 21일
개정 2017년 03월 13일	개정 2021년 08월 31일
개정 2017년 04월 10일	개정 2021년 09월 01일
개정 2017년 06월 21일	개정 2022년 04월 25일
개정 2017년 08월 21일	개정 2022년 05월 25일
개정 2017년 09월 07일	개정 2022년 08월 16일
개정 2017년 11월 24일	개정 2022년 10월 24일
개정 2018년 06월 18일	개정 2023년 01월 16일
개정 2018년 09월 21일	개정 2023년 04월 03일
개정 2018년 12월 03일	개정 2023년 05월 15일
개정 2019년 04월 10일	개정 2023년 06월 12일
개정 2019년 04월 19일	개정 2023년 08월 14일
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2023년 10월 10일
개정 2019년 11월 25일	<u>개정 2023년 10월 12일</u>
개정 2020년 04월 06일	

1. 개정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p>제 22 조(관할법원)</p> <p>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제 22 조(관할법원)</p> <p>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p> <p>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에 따라 자구 수정 및 조항 추가</p>